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626
----------	------

제출연월일: 2021. 8.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구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구청장 및 대중교통이용자의 책무(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구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5조)

1)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

2) 성동구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할 의무

라. 대중교통안전(안 제6조)

1)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마.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안 제7조)

- 1) 구청장은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바. 대중교통 이용 지원(안 제8조)

- 1) 구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사업계획 및 재정여건에 따라 매년 구청장이 정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안전법」 및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1. 7. 8. ~ 7.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

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마.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

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2.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3.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제4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하 “구”라 한다)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임금 체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안전)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 대중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및 점검
3. 한파·폭설 등 긴급상황 시 대중교통 이용 안전을 위한 대책 수립
4.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비용 지원
5. 그 밖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의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으로 하며, 그 범위 및 지원금액은 사업계획 및 재정여건에 따라 매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정안 제8조에 따라 국민의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화를 위하여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2. 미첨부 사유

-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 또는 다른 사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중교통 비용 지원 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이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비용추계를 미첨부함.

3. 작성자

- 교통행정과 행정7급 심주영 (02-2286-5677)

< 관 계 법 규 >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7., 2015. 12. 29., 2020. 4. 7., 2020. 6. 9., 2021. 1. 5.>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

- 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간선급행버스체계”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6. “교통카드”란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말한다.
7. “교통카드데이터”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전산자료 중 이용자의 통행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로서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②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
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법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
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
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
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